

총동원체제기 강제동원 조선인 노무자 사고 원인 분석에 나타나는 자의성

박진서*

〈차 례〉

1. 서론
2. '내지(內地)' 노동자보호제도로의 편입
- 강제동원 도일 노동자 분석상의 전제
3. 사고 분석의 불안정성 - 자의성이 투입하는 계기
4. 자의적인 판단의 작용 I - 과실의 전가
5. 자의적인 판단의 작용 II - 책임의 회발
6. 결론

[국문초록]

사회적 재난으로서 노동재해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사고의 책임이 피해 당사자에게 전가되는 데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총동원체제기 강제동원 조선인 노무자들의 사고 사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도일을 계기로 제한적이거나 일본 본토의 노동자보호제도에 편입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진입과 별개로 사고 이후 이뤄지는 원인 분석과 성격 규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이 이뤄질 여지가 컸다. 그리고 그러한 자의적인 판단은 대체로 피해자 개인 과실로 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나아가 자의성이 극단적으로 발휘되는 경우, 사고의 성격이 매우 민감한 별도의 사안으로 비화할 수도 있었다. 사고의 성격을 두고 벌이는 각축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기 때문에 총동원체제기 강제동원 조선인 노무자들로서는 사고의 직접적 책임을 뒤집어써야 했다.

[주제어] 강제동원, 노동재해, 재해부조, 직업적 리스크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수료

1. 서론

식민지기 노동재해 문제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과 함께 식민지 노동의 수탈성을 설명할 때 주로 거론된다. 노동자 보호입법의 부재 속에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가 도외시되었고, 이에 따라 자연히 조선인 노동자들의 재해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를 보이고자 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조선인 노동자의 작업장 내 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여러 악조건들을 분석하고, 그 인과관계의 기저에 자리한 민족적 차별을 지적한다. 특히 평시의 왜곡이 심화될 소지가 큰 총동원체제가 강제동원의 노동재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민족적 차별로 비치는 편향성(偏向性)이 더욱 선명하게 제시된다.

모리야 요시히코(守屋敬彦)는 스미토모(住友) 고노마이(鴻之舞) 광산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당시 사고 발생의 실태, 사상(死傷)의 정도, 보상의 처리 등 작업장 내 사고를 둘러싼 주요 사항들을 민족 구분 하에 설명하였다.¹⁾ 정혜경도 모리야 요시히코가 수집한 고노마이 광산 자료, 그 중에서 특히 노동자 재해 관련 기록물과 발신전보를 이용하여 조선인 노동자의 사고 발생 실상과 열악한 노동환경 사이 밀접한 연관성을 시사하고 있으며,²⁾ 고노마이 외에도 조반(常磐)탄전의 사망자 명부를 통해 작업장 내 사망 사고와 그 배경을 재구성하였다.³⁾ 김명환은 사키토정(崎戸町)의 「매화장인허증교부부(埋火葬認許證交付簿)」의 탄광노동자 사망 기록에서 노동조건 악화나 사고의 은폐를 가리키는 정황을 밝힌 바 있다.⁴⁾ 이들 연구들은 대체로 강제동원 조선인 노동자의 사고 또는 사상 수치에 주목하여 이러한 실태를 낳은 근본적인 원

1) 守屋敬彦, 『住友鴻之舞鉱山への強制連行朝鮮人の労働災害』, 梁泰昊 編, 『朝鮮人強制連行論文集成』, 明石書店, 1993.

2) 정혜경, 「일제말기 홋카이도(北海道) 스미토모(住友) 고노마이(鴻之舞)광업소 조선인 노동자 노동재해 관련 기록물 연구」, 『한일민족문제연구』 30, 2016; 「스미토모(住友) 고노마이(鴻之舞)광산 발신전보(發信電報)를 통해 살펴본 조선인 노무동원 실태」, 정혜경 외, 『강제동원을 말한다 -명부편(1) 이름만 남은 절규』, 선인, 2011.

3) 정혜경, 「전시체제가 조반(常磐)탄전 관련 명부자료를 통해 본 조선인 노동자의 사망실태」, 위의 책, 2011.

4) 김명환, 「일본 나가사키현 사키토정 「埋火葬認許證交付簿」 등재 조선인 사망자 분석」, 위의 책, 2011.

인으로 민족적 차별을 내포한 열악한 노동환경을 거론했다. 이러한 설명에서 노동재해 문제는 강고한 민족적 차별과 그에 의한 노동력 착취 실태를 드러내는 거울 역할을 한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병례는 노동재해를 논의의 중심으로 끌고 와 그 구조적인 문제에 보다 천착하고자 한다.⁵⁾ 그는 노동재해가 불운이나 부주의로 치부되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기업과 국가의 책임을 묻는 사회적 차원의 사안으로 이행하는 역사상을 전제로 사고 발생 자체만이 아니라 사고 전후 일련의 과정들이 사회 안에서 운위되는 방식까지 시야에 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1930년대 후반 이후 사고 빈발의 배경이 되는 노동조건 악화를 다루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식민권력이 작업장 내 사고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에까지 나아갔다. 그에 따르면 당시 작업장 내 사고에 대한 ‘국가적 책임’은 원활한 노동력 수급을 보조하는 언설에 그치는 것이었으며, 재해 부조 규정에 나타나는 민족적 차별과 사회적 책임의 퇴색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이병례의 연구는 식민지기 노동재해를 바라볼 때 민족적 차별만이 아니라 시좌를 틀어 노동재해가 가진 일반적 특징과 그 인식의 역사적 추이까지 아우를 필요성을 환기한다. 이를 참고하자면, 근대적 현상으로서의 노동재해가 갖는 특성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노동재해라는 유형의 일상적 사고는 산업혁명이라는 분수령을 기점으로 등장하였다. 프랑스의 법학자 알랭 쉬피오(Alain Supiot)는 산업혁명이 초래한 변화를 기술적 영역과 법률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전자는 현저하게 증가한 증기기관의 힘 때문에 노동자들이 유례없는 수준의 위험에 내몰리게 된 변화를 가리킨다. 그리고 후자는 노동을 인간의 인격에서 분리하고, 이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상품으로 취급하는 계약 형태의 등장을 의미한다. 산업사회의 도래 안에서 이 두 요소가 결합되자 그 즈음 새로이 등장했던 대규모 노동자 집단은 치명적인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

5) 이병례, 「전시 산업재해 실태와 재해보호 규정의 식민지성」, 『사림』 75, 2020.

출되기에 이르렀다.⁶⁾ 초창기 빈발하는 작업장 내 사고에 대한 보상 문제는 주로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되었다. 고용주와 노동자, 개인과 개인 간 권리 침해의 여부와 과실의 유무를 두고 쟁송을 벌인 끝에 보상 책임의 향방이 가려졌던 것이다.

그런데 통계학의 발명과 함께 ‘직업적 리스크(professional risk)’라는 개념이 대두하면서 작업장 내 사고를 이해하는 방식이 극적으로 변화하였다. 노동 현장에서의 사고란 본디 예측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의 구성 요소와 일대일로 대응하는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고를 이해할 때의 관건이 기계적이고 자연적인 인과관계(causality)의 준별에 머무르지 않고, 귀인(attribution)에 대한 종합적 고려로 옮겨가면서 복수의 가능한 원인을 두루 염두에 두게 되었다.⁷⁾ 이와 같이 직업적 리스크로 대변되는 복잡한 원인들이 작용한 결과 ‘우연적인’ 사고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인식되기에 이르자, 사고는 생산에 내재된 하나의 조건이며, 심지어 고유한 특성으로 간주되었다.⁸⁾ 이러한 이해를 받아들인다면 특정 개인에게 사고의 과실을 물어 그 책임을 지우기가 애매해진다. 그 대신에 사고 위험을 배대한 사회 전체에 책임을 고정해서 재분배하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마침내 보험이라는 장치를 들여와서 사고의 보상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요컨대, 작업장 내 사고의 보상 의무를 귀책 사유를 가진 개인에게 오롯이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직업적 리스크에 대한 이해 위에서 보험을 매개로 사회 전체가 분담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상존하는 직업적 리스크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수용함으로써, 사고에 대한 사후적 보상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책임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무조건 보상을 표방하는 보험은 사고 책임의 문제를 해소한 것이 아니라 우회한 것이었다. 단지 사회 전체가 끌어안아 보상으로써 무마했을 따름이다. 보험의 문법 안에서 노동자에게 남

6) 알랭 쉬피오 저, 박제성 역, 『사회국가의 위대함과 시련』, 『노동법연구』, 2015, 244쪽.

7) François Ewald, *The Birth of Solidarity*, Duke University, 2020, p.188.

8) Ibid. p.187.

은 권리는 오직 보상받을 권리뿐이다.⁹⁾ 기실 보험이 놓치고 넘어간 책임의 문제는 곧 사고의 성격을 규정하는 장, 직접적으로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장에서 제기된다. 이는 보험이 구현하는 정의와는 성격이 다른 정의를 요구하는 영역이다.

단순히 보상만으로 해소될 수 없는 책임을 다시금 강조하는 정의, 나아가 해원(解冤)을 시사하는 정의의 장은 과연 투명한가. 전술하였듯이 사고의 발생에 이르는 복잡한 인과를 명확히 재구성하고 이에 따라 책임 소재를 엄밀하게 준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회 전체가 그 책임을 나눠 갖되, 직업적 리스크의 재분배를 위해서 사고 발생의 인과에 대한 일정한 분석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이 지점에서 그 직접적인 원인을 두고 모종의 ‘판단’이 이뤄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판단을 거치며 명명되는 ‘노동재해’란 사고의 ‘발생’ 시점에 이미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그리고 판단을 내릴 권위를 둘러싼 역학관계가 결합하여 도출되는 ‘인정’으로써 비로소 완성된다.

그런데 여기에 어떠한 종속 관계가 더해지면 사고의 성격을 논하는 장이 왜곡될 우려가 크다. 노동재해는 이미 마련된 기준에 부합하는 바로써 발견되는 것이라기보다 명문화 바깥에서 판단에 의하여 구성되고 잠정적으로 일 단락되는 것이다. 명문화된 기준은 보편적이므로 자신 앞에서 일체의 인격적 종속관계를 거부하고 절대적인 평등을 함의한다. 그러한 동시에 추상적이므로 실제의 개별 사례와 비교하면 언제나 불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상하고 허약하다.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자가 모종의 종속 관계를 이용하여 자의성을 실질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은 명문화된 기준 바깥에 마련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작업장 내 사고에서 개인의 탓을 더하거나 덜어내는 그야말로 순수한 구분은 기준을 명시한 조문의 효력이 정지된 영역에서 내려지는 판단으로 이뤄진다. 그러므로 노동재해 문제의 본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에 의거하여 사회가 온전히 떠안은 사고들의 일반적 특징보다

9) Ibid. p.167.

규정이 흘러버리는 사고들의 특징, 그리고 이렇게 엇갈렸던 지점, 그 순간에 주목해야 한다. 즉, 사회적·일상적 재난으로서 노동재해가 품은 근본적 모순은 보상 여부와 별개로 모종의 판단에 의해 배제된, 바깥 말해 원인 분석상 ‘개인의 책임으로 내맡긴 것’들 가운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노동재해 발생의 책임이 사회로 귀착하는 추이 안에서 그 책임의 분배를 두고 벌이는 각축은 일정한 권위를 갖춘 자가 자의적인 판단을 내림으로써 일단락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사고의 원인을 논의하는 장이 동요하게 된다. 이 안에서 노동재해 문제의 관건으로 주목할 지점이 바로 인정의 메커니즘, 바깥 말해 자의성이 관철되는 양상이다. 기실 무시로 일어나는 작업장 내 사고 발생의 인과를 있는 그대로 재구성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위는 이러한 난맥상을 일거에 일소한다. 이 글에서는 바로 이 ‘판단’, 즉, 구체적인 상황에서 드러나는 자의성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구상 위에서 이 글에서는 총동원체제기 강제동원 조선인 노동자들의 사고 사례를 소재로 삼았다. 노동재해 관련 규정이 정비되는 추세가 무색하게 이들을 규정하는 미약한 정치적·사회적·법적 지위가 극적으로 작용하여 사고 원인 규명에 개입하는 자의성이 효과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접근하기 위하여 모리야 요시히코가 편집한 강제동원 조선인 노동자 관련 자료집, 정부 차원에서 조사한 강제동원 피해 관련 보고서 등을 주로 활용하였다.

먼저 1장에서는 일본 본토에서 광부 대상 노동재해 부조제도가 점차 갖춰져가는 양상을 일별하고 강제동원 조선인 노동자들이 도일을 계기로 이에 포함되었음을 짚어본다. 이어서 2장에서는 규정의 정비와 별개로 자의성이 치고 들어올 수 있는 배경을 조문과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3장과 4장에서는 공통적으로 자의성이 발휘되는 사례들을 다루는데, 대체로 어떠한 방향성을 보이는지 가늠해보는 한편, 극단적으로 비화하는 사례도 살펴볼 것이다.

2. ‘내지(內地)’ 노동자보호제도로의 편입¹⁰⁾ - 강제동원 도일(渡日) 노동자 분석상의 전제

1937년에 나온 『취업제한과 재해부조(就業制限と災害扶助)』에서는 일본의 노동자보호입법, 특히 재해부조 입법의 궤적을 민사책임주의에서 업무책임주의로의 이행과 연결지어 그리고 있다. 이와 같이 과실의 세계에서 리스크의 세계로 이행함에 따라, 바꿔 말해 과실책임주의에서 계약책임주의, 다시 업무책임주의로 이행함에 따라 이제 업무상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하에 보상이 점차 보장되는 추세를 보이게 된다.

1873년 <일본갱법(日本坑法)>에서는 아직 광부 보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1890년 9월 공포된 <광업조례(鉱業条例)>에 이르러서는 처음 부조 규정¹¹⁾이 나타난다. <광업조례> 당시에는 노동자에 대한 보상 의무가 이른바 구휼 행위로 해석되고 광부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에 대하여 『취업제한과 재해부조』에서는 일종의 계약책임주의에 일본 특유의 온정주의가 가미된 것으로 보았다.¹²⁾ 뒤이어 1905년에는 <광업법(鉱業法)>¹³⁾과 <광업법시행세칙(鉱業法施行細則)>¹⁴⁾이, 이어서 1916년에는 <광부노역부조규칙(鉱夫勞役扶助規則)>¹⁵⁾이 공포되면서 노

10) 이 글에서는 주로 광산노동에 배치되었던 강제동원 노무자 사례들을 다루므로, 아래에서는 광부를 대상으로 하는 법령만을 언급한다.

11) <광업조례> 내 직접적으로 재해부조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72조 광업인은 다음의 경우 그 고용인 광부를 구휼하고 그 구휼규칙은 관할 광산감독서의 인가를 받는다. 1. 광부 자기의 과실이 아니라 취업 중 부상당한 경우에 진료비 및 요양비를 보상할 것(社会保障研究所, 『日本社会保障前史資料』 第3卷, 至誠堂, 1981, 172쪽).

12) 保健衛生協會, 『就業制限と災害扶助』, 1937, 154쪽.

13) <광업법> 내 직접적으로 재해부조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80조 광부가 자기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지 않고 업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때에 광업권자는 명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광부 또는 그 유족을 부조하여야 한다(社会保障研究所, 위의 책, 至誠堂, 1981, 175쪽).

14) <광업법시행세칙> 내 직접적으로 재해부조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66조 광업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에 대해서는 다음의 표준에 따라 부조 규칙을 정하고 광업 착수일 30일 이전까지 이를 제출해 광산감독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진료비와 치료비는 그 실비 2. 요양 때문에 휴업 중일 때에는 그 일수에 상당하는 임금액의 3분의 1 이상 3. 장제료는 10원 이상 4. 유족부조료는 사망자가 받았던 임금 100일본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 5. 불구궤질자의 부조료는 그 임금의 100일본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社会保障研究所, 앞의 책, 1981, 176쪽)

동자의 업무상 상병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책임이 확립되어 갔다.

1922년에 공포되고 진통 끝에 1926년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법(健康保險法)>은 <공장법(工場法)>과 <광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노동자를 강제 피보험자로 하므로 일종의 산재보험 성격을 갖는다.¹⁶⁾ 무엇보다 특기할 점은 건강보험을 통하여 재해보상을 노동자의 권리로 법인(法認)함으로써 기존의 온정적·종속적 노사관계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1931년에는 사업주의 부조 책임을 정부가 보험하는 <노동자재해부조책임보험법(勞働者災害扶助責任保險法)>까지 제정되었다.¹⁷⁾ 물론 미진한 점도 있었지만,¹⁸⁾ 이러한 추이로 볼 때 20세기 전반 일본에서는 직업적 리스크를 의식하면서 점차 노동재해 부조 제도를 확대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식민지 조선에는 시행 논의만 무성했을 뿐 끝내 <공장법>을 비롯한 노동자 보호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1930년 조선총독부 식산국에서 펴낸 『조선에서의 광부노동사정(朝鮮に於ける鑛夫勞働事情)』를 보면 광부의 부조 구제 방책에 대해서 특별히 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지만 대부분의 광산에서 내규를 마련하거나 일정한 관례하에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¹⁹⁾ 종업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업무상 생긴 부상이나 질병

15) <광부노역부조규칙> 내 직접적으로 재해부조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7조 광부가 업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때에 광업권자는 해당 광부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였음을 증명할 경우를 제외하고 본 칙의 규정에 의하여 부조를 받을 자가 민법에 의하여 동일의 원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 광업권자는 부조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社會保障研究所, 앞의 책, 1981, 181쪽)

16) 옥외노동자(주로 토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공장법>과 <광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건강보험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1931년 4월 옥외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해부조 제도로서 <노동자재해부조법>이 제정된다.

17) 업무책임을 전항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고용주에게 보상 의무를 무겁게 지었을 때, 도리어 노동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가령, 대규모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나왔을 때 고용주가 파산하게 되면 노동자로서는 고용주로부터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마련된 법이 <노동자재해부조책임보험법>이었다.

<노동자재해부조책임보험법> 제1조 정부는 본 법에 의하여 노동자재해부조책임을 관장한다. 제2조 노동자재해부조책임보험에서는 노동자재해부조법, 공장법 그리고 광업법에 근거하는 부조책임을 보험하는 것으로 한다.(社會保障研究所, 앞의 책, 1981, 188쪽)

18) 『就業制限と災害扶助』에서는 1930년대 중반에 이르러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사업주의 책임이 인정되는 추세라고 하지만, 당시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정부와 사업주가 전담하지 않고 노동자도 일정 부분 지고 있다는 점에서 순수한 업무책임주의에 이르지지는 못했다고 보고 있다.(保健衛生協會, 앞의 책, 1937, 155쪽)

이라면 치료비와 휴업부조료 및 장애부조료, 장제료와 유족부조료 등 ‘내지’의 <광부노역부조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들이 준용되고 있었다.²⁰⁾ 재해부조에 대한 규정이 없이 각 사업장별로 관행적으로 부조가 이루어지는 양상은 앞서 거론한 <광업조례>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다가 1938년 5월 <조선광부노무부조규칙>에 들어서야 공식적으로 노동재해에 대한 부조규정이 처음 마련되었다.²¹⁾

한편, 1938년 5월 <국가총동원법>이 공포되고 그에 따라 이듬해 7월 <국민징용령>이 시행된다. 이들 법령은 ‘내지’에만 시행된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조선, 대만, 화태 등 외지에도 적용되었다. 그즈음부터 해방 직전까지 모집(1938.5~1945.6), 징용(1939.10~1945.4), 관알선(1942.2~1945.6) 등의 방식으로 일본으로 강제동원된 조선인은 연인원 1,020, 125명에 이른다.²²⁾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된 노무자에게는 그 반대급부로서 재해부조가 명목상으로 보장되었다. 징용대상자에게 적용된 <국민징용령>에는 부조규정이 갖춰져 있었고,²³⁾ 이후 <국민징용부조규칙>(1943)도 시행되었다.²⁴⁾ 아울러

19) 아울러 광부 외에 다른 직종에서도 재해부조를 비롯하여 사회보합적 성격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을 대상으로 한 은급(恩給)제도에 대해서는 이용석, 『일제강점기 경찰의 은급제도 - 1923년, 1933년 은급법 개정을 중심으로』, 『사림』 69, 2019를, 철도국 현업원을 대상으로 한 공제조합에 대해서는 염진일, 『조선총독부 철도국의 현업원 공제조합 운영과 그 성격(1909~1937)』,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을 참고할 것.

20) 이외에도 『조선에서의 광부노동사정』에서는 광부 간의 상호부조도 소개하고 있다. 대개 광산 측으로부터 매월 또는 종종 상당한 기부를 받거나 회원인 광부로부터 매월 일정한 회비를 걷어 자금으로 하는 방식이었는데, 조사했던 47개 광산 중 일정한 규약을 갖추고 실행하고 있는 광산은 8곳, 일정한 규약은 없지만 적립금을 모아 관혼, 장제 등 길흉화복에 대하여 일시금을 지급하는 광산은 2곳에 불과했다. (조선총독부식산국, 『조선에서의 광부노동사정』, 1930, 91~122쪽)

21) <조선광부노무부조규칙> 내 직접적으로 재해부조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광부가 업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때 광업권자는 본 명의 규정에 따라 부조를 해야 한다. 단, 부조를 받는 자가 조선민사령에서 정한 민법에 의하여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광업권자는 부조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앞 항의 부조 의무는 별도의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광부의 해고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이 없다.

제11조 광부가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광업권자는 비용을 들여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樋口雄一, 『戰時下朝鮮人勞務動員基礎資料集 V』, 綠蔭書房, 2000, 233쪽)

22) 정해경·허광무·조건·이상호, 『반대를 논하다 ‘반일종족주의’의 역사부정을 넘어』, 선인, 2020, 223쪽.

23) <국민징용령> 내 직접적으로 재해부조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9조의 3 피징용자가 징용되어서 그 가족과 세대를 달리하게 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정 또는 피징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업무상 상이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징용이 해제된

관알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선총독부노동자알선요강>(1940년)에도 재해부조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다.²⁵⁾

아울러 주목되는 점은 일본으로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무자들의 경우 도일을 계기로 건강보험을 포함하여 ‘내지’의 노동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²⁶⁾ 형식적으로나마 조선에는 없었던 강제가입 형식의 사회보험에 가입하고,²⁷⁾ 업종에 따라서, 예컨대 광부라면 <광부노역부조규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징용의 취지를 알리고 징용에 대한 지도서’ 역할을 자임했던 『국민징용의 해설』에서는 이러한 동향²⁸⁾을 요약적으로 담은 대목이 확인된다.

경우에 본인 또는 가족이 생활하는 것에 곤란한 때에는 명령에 정한 바에 따라 이에 대한 부조를 할 수 있다. 피징용자가 징용되어 총동원 업무에 종사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업무상 상이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 생활하는 것에 곤란한 때에는 명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이에 대한 부조를 할 수 있다.(樋口雄一, 위의 책, 2000, 372쪽)

24) 1943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령 제309호로 공포된 <국민징용부조규칙>은 1941년 12월 22일 일본에서 공포된 법령과 동일한 내용이었다. <국민징용부조규칙>에서 직접적으로 재해부조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조 부조는 다음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행한다. 2 피징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지 않고 업무상 상이를 입었거나 질병에 걸려 이로 인하여 징용이 해제된 경우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생활함에 곤란해졌을 때 3 피징용자가 징용되어 총동원 업무에 종사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지 않고 업무상 상이를 입었거나 질병에 걸려서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 생활함에 곤란해졌을 때(『朝鮮總督府官報』 5000, 1943년 9월 30일자, 228쪽)

25) <조선총독부노동자알선요강> 내 직접적으로 재해부조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2조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당하고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때 사업주는 본 요강의 규정에 따라 부조를 해야 한다. 단, 부조를 받는 자가 민법에 의하여 동일한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사업주는 부조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23조 노동자가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사업주는 치료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樋口雄一, 위의 책, 2000, 699쪽)

26) 강제동원 조선인 노무자들에게 적용되었던 ‘내지’의 노동자보호제도의 연원과 실상에 대해서는 박진서, 『총동원체제(1939~1945) 강제동원 조선인 노무자 대상 재해부조의 연원과 양상』, 『한국학연구』 67, 2022을 참고할 것.

27) 강제동원 피해자 윤병렬(尹秉烈)이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기증한 급여명세서 10점에는 연금보험과 건강보험 명목의 공제가 명시되어 있다.(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학예연구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상설전시 도록』,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2016, 194~195쪽)

28) 아울러 1937년 1월 1일 개정된 미쓰비시(三菱)중공업 요코하마(横浜) 선거(船渠) <직공취업규칙(職工就業規則)>(부평역사박물관 소장)에도 눈에 띄는 조목이 있다.

제45조 직공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 15일 이내에 귀향하는 경우에 기차, 기선 3등 임금, 육행(陸行)수당 1리 당 20전 및 여행일수 1일당 2원의 일당을 지급한다. 1 미성년자 또는 여자이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되었을 때 2 업무상의 상병으로 인하여 <공장법>에 의해 요양 또는 요양비의 지급을 받거나 휴업부조료의 지급을 받는 자로 해고되었을 때 3 직공부조규칙 별표 제8급 이상에 해당한 자가 해고되었을 때 4 직공부조규칙에 의하여 타절부조료 지급을 받던 부조

문: 징용되어서 병에 걸려 사망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우를 받습니까?

답: 업무상의 경우와 사상병으로 인한 경우에 취급이 다릅니다. 업무 때문에 상병을 얻거나 사망한 경우는 공장이라면 <공장법>, 광산은 <광부노역부조규칙>에 의해서 부조를 받습니다. (중략) 부상과 병이 낫더라도 불구자가 된 경우는 장애부조료가 지급되어서 예를 들어 양쪽 눈을 실명했을 때 급여의 600일분 등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부조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망했을 때는 급여의 400일분의 유족부조료와 약간의 장제료가 유족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상병의 경우 이상과 같은 부조는 없지만 공장과 광산은 거의 전부 국민건강보험에 강제가입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에 의한 부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은 내지의 제도이지만 조선에는 아직 <공장법>과 <건강보험법>에 상당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오직 광산노동자에 대해서 <광부노무부조규칙>이 있고 내지와 같은 형태의 부조를 시행하고 있지만 공장에서도 징용을 실시하는 큰 공장에서는 내지의 <공장법>과 같은 형태의 부조제도를 복리시설로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실제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사상병의 경우도 공장과 광산 측에서 정의(情誼)상 상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²⁹⁾

일본 ‘내지’에 징용되면 공상(公傷)일 경우 각 업종별 부조 조항에 의거하여 일정한 부조를 제공받고, 설령 사상(私傷)이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조선에서는 애시당초 공식적인 부조 관련 법제가 부재한 상태였고, 전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그 반대급부로서 일련의 노무원호제도, 예컨대 1938년 <조선광부노무부조규칙>, 1940년 <조선총독부노동자알선요강>, 1943년 <국민징용부조규칙> 등이 있었을 뿐이었다. 이러한 차이를 감안해보면, 직업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 범위가 확충되는 한편,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내지’로 유입됨에 따라 강제동원 노무자들도 ‘내

가 폐지되었을 때 5 업무상의 상병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법>에 의해 요양의 급여 또는 요양비의 지급을 받는 자로 해고되었을 때.

29) 국민총력조선연맹, 『국민징용의 해설: 질문에 답하는 일문일답식으로』, 1944, 45~46쪽.

지'의 제도에 명목상이나마 편입되었다고 보여진다.

3. 사고 분석의 불안정성 - 자의성이 투입하는 계기

전술한 일련의 추이는 일견 강제동원 도일 노동자들이 극적인 지위 상승을 경험한 것처럼 보이게 하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열악한 노동조건에 내몰려서 일상적으로 노동재해 위험에 시달려야 했으며, 사고를 당한다면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했다는 실태가 당사자들의 구술 채록을 통해 이미 많이 확인되었다. 이법역(異法域) 외지(外地) 조선에 비해서 법적인 보호 장치가 정비된 영역에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재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공식적인 규제의 유무를 넘어서 이들의 노동재해 실태를 이해하는 데에 다른 관건이 있음을 시사한다. 아래에서는 공식적인 규제가 마련되었음에도 규제가 품고 있는 일종의 '독소조항'이 규정을 밀어내는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재해 부조 법령들을 보면 예외없이 부조의 요건으로 '업무상'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그렇다면 이 '업무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1942년 <조선광부노무부조규칙>에 대하여 해설하고 있는 글에서는 '업무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업무상'이란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광부가 광업권자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단순히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광구 밖에서도 광업권자의 지휘감독 하에 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하여 이에 따라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의 부상으로 **간주**(이하 강조는 인용자)된다. 또 가령 업무외의 행위라고 해도, 해당 광산의 설비의 결함에 의하거나 다른 광부의 부주의에 기인하여 야기한 재해 등에도 업무상이라고 간주됨은 물론 해당 광부의 행위가 자신의 업무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여도 업무에 대한 선의적

조치에서 나온 경우의 사상질병은 업무상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통상 고용계약 관계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는 낙뢰, 지진 등 완전히 자연재해의 불가항력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는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³⁰⁾

이에 따르면 ‘업무상’이란 ‘간주’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업무상’과 마찬가지로 재해부조의 인정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 요건이 바로 ‘중대한 과실’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위의 글에서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광부의 부조는 원칙으로서 재해의 원인이 업무에 기인한 경우는 광부에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광업권자에 부조의무를 부담시키고(중략) 그 예외로서 광부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광업권자 입장에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도지사의 **인정**(이하 강조는 인용자)을 받은 경우는, 휴업부조료 또는 장애부조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중대한 과실’이란 구체적 경우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해당 행위가 일반적으로 준수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위반해서 부상하는 경우, 질병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휘에 따르지 않아서 증상이 가중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통상의 주의를 결여하여 야기한 부상, 질병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하지 않는다.³¹⁾

‘중대한 과실’ 역시 ‘판단’ 내지는 ‘인정’되는 것이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업무상’과 ‘중대한 과실’은 객관적인 실체로서 이미 존재하는 조건이 아니다. 단지, 판단 이후에 명명될 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판단은 누가 내리는가. 이와 관련한 다른 규정도 살펴보자.

30) 佐藤漸, 『朝鮮鑛夫勞務扶助規則に就て』, 『朝鮮勞務』第2卷 第6號, 1942, 60~61쪽.

31) 佐藤漸, 위의 글, 1942, 64~65쪽.

〈광부노역부조규칙〉

제30조 **광무서장**(이하 강조는 인용자)은 **직권**으로써 또는 신청에 의하여 광부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원인, 제20조의 각 호에 있는 신체장애의 정도와 기타 부조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것을 **심사**하고 사건의 조정을 할 수 있다.³²⁾

〈조선총독부노동자알선요강〉

제27조 노동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사업주는 그 사실에 대하여 **도지사의 인정**을 받았다면 휴업부조료 및 장애부조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³³⁾

〈조선총독부노동자알선요강세칙〉

17. 요강에 따라 사업주가 해야 할 부조사실의 **인정**에 대해서는 **공정타당**을 기한다. 특히 요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정도의 **인정**에 대해서는 되도록 관공립 병원 또는 공의의 **진단**에 따르고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사업주는 **지방관헌**과 협의하여 **지정**된 의사의 **진단**에 따르도록 한다.³⁴⁾

‘광무서장’, ‘도지사’, ‘지방관헌’에서 확인되듯,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거나 그 논의에 개입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가 아니라 국가의 관공서이거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음으로써 일정한 권위를 갖춘 자들이었다. 이들은 규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권’을 통해서 규정의 기능을 허물 수 있는 자의성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권위가 작동하는 한 규정의 완비란 공허하고 요원한 표현이었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인정’ 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없이 단지 ‘공정타당’을 막연히 기대할 따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이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고 현장에서 조사된 정보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 내용이 초기 판단의 향방을 좌우하는 데에 결정적

32) 社会保障研究所, 앞의 책, 1981, 181쪽.

33) 樋口雄一, 앞의 책, 2000, 699쪽.

34) 樋口雄一, 앞의 책, 2000, 707쪽.

인 역할을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고 직후 이뤄지는 원인 분석은 노동재해 관련 규정이 존재함에 불구하고 이를 밀어내고 자의성이 투입할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스미토모 고노마이 광산의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모리야 요시히코가 편집한 「공상보고표철(公傷報告票綴)」과 「노동재해조우기록(勞働災害遭遇記録)」은 단연 특기할 만하다.³⁵⁾ 「공상보고표철」은 1941년 12월 15일부터 1943년 3월 30일까지 있었던 총 1,143건의 사고 조사 내용이 정리된 자료이고, 「노동재해조우기록」은 「공상보고표철」을 바탕으로 작성된 노동재해일람표와 ‘1943년 1월 19일 박용범(朴龍範) 사망사고 조사보고서’, ‘1943년 2월 26일자 사망사고 원인 조사보고서’로 꾸려진 자료이다.

우선 「공상보고표철」은 일본인 현장 책임자가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사고의 경중에 상관없이 1건당 1매씩 현장에서 작성된 문서이다.³⁶⁾ 여기에는 광산명, 갱내외, 직명, 성별, 이름, 연령, 발생일시, 발생장소, 부상원인, 계원 존재여부, 부상의 이름, 과실/불가항력 여부, 예상 치료일수, 예상 휴업일수, 부상의 경중 등 각 사항이 기록되었다. 휴업 2일 이내는 경미한 부상, 휴업 2주간 미만은 경상, 휴업 1개월 이내는 중상(中傷), 휴업 1개월 이상은 중상(重傷)으로 분류되었다.³⁷⁾

비록 고노마이 광산의 것은 아니지만, 「공상보고표철」에 수록되는 문서들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카이지마(貝島) 탄광의 「광산재해사변계출방심득(鉦山災害事變届出方心得)」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35) 모리야 요시히코는 몬베쓰(紋別)시립향토박물관에 소장된 고노마이 광업소 자료 107035(公傷報告票綴 半島人)와 107039(昭和18年度半島人公傷報告綴), 107047(公傷報告票綴元山坑), 107041~45(工作課・經理課・製鍊課・俱知安内坑・元山坑・三王坑公傷報告綴) 등 다양한 기록물철에 편철된 문서 가운데 조선인 부분을 발췌해 ‘공상보고표철’이라는 자료를 만들었다.(守屋敬彦, 『住友鴻之舞鑛山への強制連行朝鮮人の勞働災害』, 『朝鮮人強制連行論文集成』, 明石書店, 1993)

36) 守屋敬彦, 『解題』, 『戦時外国人強制連行関係史料集 3 朝鮮人 2 下』, 明石書店, 1990, 2103쪽.

37) 守屋敬彦, 위의 글, 1993, 62~63쪽.

광산재해사변계출방심득(釜山災害事變届出方心得)³⁸⁾³⁹⁾

1. 광종, 광구번호, 광산명, 광업권자 또는 광업대리인의 씨명
2. 재해의 종류
3. 재해 발생 연월일시
4. 사상자 직명, 씨명, 연령 및 부상정도

직명은 업무별 및 계원, 광부별을 명확하게 할 것. 반도인, 근로보국대일 때에는 여부를 기입할 것. **부상정도는 즉사, 부상 후 사망, 중상 또는 며칠간 휴업 할 지 기입할 것.**(이하 강조는 인용자) 사망 또는 중상자와 동시에 부상자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 부상자에 대해서도 앞의 내용 모두를 적는다.

5. 재해 장소
6. 재해의 원인 및 그 상황

원인은 명료하게 기술하고 만일 판명되지 않을 때에는 그 원인으로 추측되는 사실을 기록할 것. 예를 들어 낙반에 의한 재해 사변의 경우는 낙반의 원인, 광차 탈선의 경우는 광차 탈선의 원인 등을 명료하게 적을 것. 상황은 재해 발생 당시의 현장 상황 및 이재자의 작업 상황과 함께 재해의 경과를 특히 자세히 적을 것.

7. 담임계원직 씨명
8. 담임계원의 재해발생 전 순시 시각 및 그 상황.
9. 담임 계원이 재해에 대하여 취한 조치
10. 기술관리자가 재해에 대하여 취한 조치

38) 인용 및 강조 내용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을 생략하였다. 생략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林えいだい, 『戦時外国人強制連行関係史料集 2 朝鮮人 1 下』, 明石書店, 1991, 1253~1254쪽을 참고할 것.

39) 1933년 1월 개정된 <조선광업령시행규칙>의 별표 15호 서식 「재해사변신고」가 이와 비교할 만하다. 여기에 수록된 항목들로는 광종, 광산명, 광업권자, 재해사변발생연월일시, 사상자 직명·씨명, 연령 및 부상정도, 재해사변발생 장소, 담임계원 직명·씨명, 담임계원의 재해발생 전 순시시각 및 그 상황, 담임계원이 재해사태에 대하여 취한 조치, 광업권자가 재해사태에 대하여 취한 조치, 광업권자가 사상자에 대하여 취한 조치가 있다. 대체로 비슷하지만 「재해사변신고」에는 사고의 원인 분석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1938년 8월 31일에 이 양식이 삭제되지만, 이를 대체하는 보고 양식은 찾을 수 없다.

11. 광업권자가 재해에 대하여 취한 조치
12. 광업권자가 사상자에 대하여 취한 조치
13. 재해 상황의 설명도는, 재해현장의 약도를, 평면도나 정면도 또는 측면도로 나타내고 그림 안에 이재자의 위치, 이재상황 또는 수용(收容) 위치를 명시할 것.

이러한 지침들은 당국에 보고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고노마이 광산에서도 동일했을 것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 내용은 1943년 1월 19일 고노마이 광산에서 있었던 박용범(朴龍範)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43년 1월 19일 朴龍範 사망 사고 조사보고서⁴⁰⁾

재해의 원인 및 그 상황

1. 재해의 원인

이재자는 당일 1번방(番方)에 입갱하여 동료 松田万田 이하 6명과 함께 8호갱 270미터 갱도 북 160번 현장 부근에서 갱도 청소를 하고 오후 3시 퇴근시간 후에도 계속 잔업을 하였다. 잔업을 마치자 케이지⁴¹⁾에 타고 위 갱도로 올라가 출갱(出坑)할 6명과 함께 1호 케이지에 탔다. 松田이 상승 신호를 200미터 갱도 플랫폼⁴²⁾에 보냈고 플랫폼에서 이 신호를 받은 적입부(積込夫) 昌原善昌이 기계장(機械場)에게 신호를 보내서 권양기(捲揚機) 운전부 及 川四郎이 운전을 개시하여 1호 케이지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昌原이 이 때 착각을 일으켰던지 갑자기 케이지 정지 비상신호를 보내서 1호 케이지가 약 3척 정도 상승하고 정지했다. 이 때 昌原가 1호 케이지 하강 신호를 보냈다. 정지 비상신호를 받은 운전부 及 川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채 신호가 올 것을 기다리다가 다시 하강 신호를

40) 守屋敬彦, 앞의 책, 1990, 1603쪽.

41) 케이지(ケージ, cage)는 수갱 승강 장치의 하나로 사람이나 광차를 싣고 상하로 운행한다.

42) 플랫폼(プラット, plat)은 수갱, 사갱 등과 수평 갱도가 만나는 지점에서 케이지에 광차와 자재를 싣고 내리거나,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이다. 작업을 나가는 공차(空車)와 작업을 마친 실차(實車)를 조작하는 조작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받자 1호 케이지를 하강시켰다. 한편, 이 때 1호 케이지에 타고 있던 이재자는 케이지가 일단 상승하다가 약 40초 정도 정지하고서 본인의 생각과 달리 케이지가 하강하기 시작하자 불안하게 생각했는지 갑자기 270미터 갱도 플랫폼을 향해 빠져 나가려고 하다가 케이지의 천장과 플랫폼의 답거(踏居)에 끼어서 오른쪽 대퇴부를 부상당하게 되었다.

2. 재해의 정황

이 때 운전부 及川은 로프가 느슨하여 운전에 이상을 느꼈기 때문에 케이지를 플랫폼의 위치에 정지시켰다. 한편 이재자와 동승 중인 松田 이하 6명의 동료는 곧바로 갱내 견장(見長)의 계원에 급보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이재자를 광산병원에 급송하였다. **佐藤 외과의사의 진단을 받아 부상당한 오른쪽 대퇴부는 피하 완전 골절되었고 혈관도 찢겨져 있어서 출혈이 심해 여러 응급조치를 취했음에도 효과가 없이 같은 날 오후 10시 45분 마침내 사망하게 되었다.**(이하 강조는 인용자)

3. 담임계원의 재해발생 전 순시 시각 및 그 상황

담임계원 伊藤勝이 오후 5시경 270미터 갱도와 재해 장소를 순시했지만 당시 이재자 이하 7명은 같은 갱도 북 16번 현장에서 갱도 청소 중이어서 (伊藤勝은-인용자) 갱도에서 어떠한 이상을 인식하지 못했다.

4. 담임계원이 재해에 대하여 취한 조치

松田万田으로부터 재해 발생의 급보를 받은 담임계원은 곧바로 현장에 급히 가서 이상없이 6명을 지휘해 병원에 이송시키는 한편 기술관리자와 관계 각계에 연락해 다시 재해 원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5. 기술관리자가 재해에 대해 취한 조치

담임계원으로부터 재해 발생의 보고를 받은 기술관리자는 이재자를 병원에 급송하도록 명령한 후 현장에 급히 나가 재해 원인을 조사한 결과 앞에 쓴 원인이라고 판명하였다. 이에 관계 노무원을 집합시켜 재해 원인을 상세 설명하고 케이지로

오르내리는 자에게 이동 중 상하차 엄금을 철저히 주시시키고 아울러 이후 재해방지를 위해 재차 신호를 정확하게 하도록 엄중주의하고 이에 대한 감시에 힘쓰도록 계원에게 지시했다.

6. 광업권자가 재해에 대하여 취한 조치

기술관리자로부터 재해발생의 보고를 받은 광업대리인은 기술관리자로 하여금 현장에 급히 가게 해서 재해원인을 조사하도록 하여 앞에 쓴 원인이라고 판명된 것으로써 이미 기술한 것과 같이 엄중조치시켰다.

7. 광업권자의 사상자에 대하여 취한 조치

이재자는 즉시 광산병원에 이송되어 佐藤 의과의사의 진단을 받았는데 부상당한 오른쪽 대퇴부는 피하에서 완전 골절되었고 혈관도 찢겨져 있어서 출혈이 심해 여러 응급조치를 취했음에도 효과없이 같은 날 오후 10시 45분 마침내 사망하였다. 이에 유골은 노무계원에 의하여 장례식장으로 결정된 末広町 구락부에 이송 안치하고 장례에 만반의 준비를 하는 한편 이재자 출신지의 관계 관청 및 유족에게 갱내에서 중상을 당하고 사망했다고 타전하였다. 1월 20일 오후 4시부터 광업대리인 이하 다수 참여하여 엄숙히 장엄하게 장례식을 집행하였고 그 명복을 빌며 광산에서 향전(香典)으로서 우선 금 1백 엔을 증정했다.

유족부조료에 대해서는 진중 심의한 결과 이재자 사망 당시 건강보험 표준보수 등급 제5급 일액(日額) 1엔 70전의 600일본 1,020엔을 처 단분(旦那)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1월 29일 노무계원으로 하여금 가지고 출발하게 하였다.

위 사례에서 보이는 바, 작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자 담임 계원이 가장 먼저 보고받고 현장에 가서 수습에 나섰고, 뒤이어 기술관리자가 도착하여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운전부와 탑승자 사이 의사소통 상의 착오, 그리고 이동 중인 케이지에서 빠져 나가려고 했던 탑승자의 행위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광업권자 역시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사후 예방 조치 또한 현장에서의 사고 분석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광산 측에서는 노동력 관리 상 작업장 내 사고가 끼치는 악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장에서의 사고 원인을 되도록 꼼꼼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이를 사고의 재발 방지에 활용하였고 당국과도 정보를 공유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는 인용된 보고서 내 강조한 대목에서 드러나듯이, 사고 원인 조사에 권한을 갖는 자의 주관적 판단이 강하게 반영될 여지가 있었다. 이처럼 사고 보고서에 현장 관리자의 재량과 판단이 반영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낱말의 기록들이 수합된 작업장 내 사고 원인 분석은 대체로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었을까.

먼저 「공상보고표철」을 편집한 모리야 요시히코는 사고 직후 이뤄지는 초동 조사에서 내려지는 재해 원인 판명 기준이 불안정했음을 지적한다. 일본인 현장 책임자는 재해 원인을 크게 과실과 불가항력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그런데 과실과 불가항력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동일 상태로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재해 사고의 원인이 서로 다르게 분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모리야 요시히코는 이를 현장 책임자의 개인적 차이, 매 순간 판단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⁴³⁾

비슷한 맥락에서 그는 스미토모 신우타시나이(新歌志内) 탄광의 결근 현황을 분석하면서 사고 사유로 봤을 때 공상(公傷) 사고로 짐작됨에도 불구하고 사고 사유가 사상(私傷) 사고로 처리되었던 점을 지적하고 있다.

〈표 1〉 사상병으로 다뤄진 사례 중 공상으로 의심되는 사례

광부번호	이름	휴업일수 및 이유
3001	金判錫	7/24(사고, 1일)
3004	金奇鳳	6/24(머리 사고, 1일)
3006	金群岩	6/7(복부 사고, 1일)
3007	金三次	9/11~9/17(손 사고, 7일), 9/24~9/25(손 사고, 2일), 9/27(손 사고, 1일)
3008	尹千石	5/31(사고, 1일), 10/28(사고, 1일)
3009	金我之	11/25(사고, 1일)

43) 守屋敬彦, 앞의 글, 1993, 67쪽.

3016	金熙順	6/6~6/7(허리 사고, 2일)
3021	全占鐘	5/27~5/29(사고, 3일)
3024	金宗善	10/4~10/12(발 사고, 9일)
3025	文昌吉	5/29~5/30(발 사고, 2일), 8/19(足切, 1일), 9/17(손 사고, 1일)
3026	崔炳孝	3/26(흉부 타박, 1일)
3027	金旺骨	6/25(등 사고, 1일)
3034	李鴻奎	6/6(손 사고, 1일)
3035	金炳元	5/24~5/25(사고, 2일)
3037	崔正奉	4/13(머리 타박, 1일), 5/30(손 사고, 1일), 6/7(발 사고, 1일), 9/3~9/7(발 사고, 5일)
3039	金奉善	6/10~6/11(차아 사고, 2일)
3040	吳萬泳	4/13(근골 타박, 1일)
3042	李喆柱	6/5(발 사고, 1일), 6/18~6/22(손 사고, 5일)
3043	徐琪周	9/18(손 사고, 1일)
3046	金鍾煥	5/2~5/7(손을 넣음, 5일)
-	李根龍	12/12~12/14(허리 타박, 3일)
-	樓山海達	9/5(발 사고, 1일)
-	新本柱南	12/19(타박, 1일)
-	中川尙鎔	9/21(발가락 사고, 1일)
-	許二慶	10/2(어깨 사고, 1일)
-	朴尙祚	12/14~12/28(타박, 15일)
-	伊田太龍	10/2(발 사고, 1일)

출처: 守屋敬彦, 『第二次大戦下被強制連行朝鮮人労働者の寮生活: 住友鑛業所歌志内礦業部新歌志内炭鑛視和寮』, 『佐世保工業高等専門学校研究報告』第34号, 1997

모리야 요시히코는 부상 부위와 증상으로 봤을 때 광산 노동 현장이 아닌 일상 생활에서 이러한 성격의 사고를 이렇게 자주 당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본다. 따라서 공상과 사상을 구분하는 근거 조항이 있었지만, 44) 그와 별

44) 국민동원계획에 따라 일본 탄광에서 일하고 있는 조선인 노동자의 재해에 대한 취급을 다룬 『이업 조선인노무자의 재해사고취급요강』에서는 업무상 사망자를 ‘순직자(殉職者)’로, 업무상에 의한 상

개로 현장에서 일본인 계원이 내리는 판단이 공상/사상 여부를 결정적으로 좌우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양심적 계원이라면 공상으로 하는데, 차별의식이 있거나 회사와 가까운 계원이라면 사상으로 처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월 18일 부상을 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3009번 김아지(金我之)의 경우, 본디 사상으로 처리되었는데, ‘현장에서 의의가 있어’ 공상으로 처리되었다.⁴⁵⁾ 이 경우 병원이나 노무계가 사상으로 처리했던 것이 현장 계원의 의견에 따라 이후 뒤바뀐 것이다.⁴⁶⁾

박용범의 사고 사례와 모리야 요시히코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고노마이 광산에서는 개별 사고마다 면밀하게 사고 원인을 분석하였지만, 그 책임의 향방을 좌우하는 판단의 영역에서 어떠한 방향으로든 사측 관리책임자의 자의성이 강하게 작용할 여지가 다분했다. 사고 상황에 따라서, 혹은 현장 관리자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 사고의 원인 분석은 충분히 엇갈릴 수 있는 것이었다. 심지어 김아지의 사례에서 보듯, 오히려 조선인 노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뒤바뀔 수도 있는 것이었다. 작업장 내 사고 발생의 내적 인과에 대한 분석 내용과 여기에서 비롯되는 사고의 성격 규정은 이렇게 불안정한 성질의 것들이었다.

4. 자의적인 판단의 작용 I - 과실의 전가

작업장 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 분석의 내용이 실제의 직·간접적인 인과관계나 관련 규정의 조항과는 별개로 초동 조치를 담당하는 계원의

병자를 ‘공상자(公傷者)’로 표기하고 있다.(長澤秀 編, 『戰時下朝鮮人中國人聯合軍俘虜強制連行資料集 2 朝鮮人強制連行 文書編』, 綠陰書房, 1996, 238쪽)

45) 김아지는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공상으로 인하여 2일간 휴업하였다. 이유는 불명(不明)이었다. 공상으로 인한 휴업표는 守屋敬彦, 『第二次大戰下被強制連行朝鮮人労働者の寮生活: 住友鑛業所歌志内礦業部新歌志内炭鑛親和寮』, 『佐世保工業高等専門学校研究報告』第34号, 1997, 117쪽을 참고할 것. 한편, 사상의 경우 휴업 원인, 증상이 분명하게 제시되는 반면, 공상의 경우 대부분이 불명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46) 守屋敬彦, 앞의 글, 1997, 116쪽.

판단에 의해 결정적으로 좌우되는 바를 확인했다. 그렇다면 이 자의적인 판단들은 그야말로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것일까, 아니면 기저에 일정한 방향성을 띠고 있는 것일까.

정혜경은 『노동재해조우기록』에 편철된 노동재해 일람표를 중심으로 조선인 노무자들의 사고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 일람표에 총 1,156명이 수록되어 있으나 중복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다수 발견되므로 실제 발생건수는 1,156건, 852명(1회 등재 618명, 2회 중복 184명, 3회 중복 33명, 4회 중복 15명, 5회 중복 1명, 6회 중복 1명)으로 보아야 한다.⁴⁷⁾

수록 사항 중 사고의 원인, 특히 책임의 향방을 가리키는 항목이 바로 과실/불가항력 여부일 것이다. 이 항목을 보면 전체 1,156건 중 과실이 958건, 불가항력이 177건, 통계불요가 5건, 공란이 16건으로 과실이 압도적이다.⁴⁸⁾ 앞서 소개한 박용범의 사망사고도 노동재해 일람표에서는 과실로 분류되었다.⁴⁹⁾ 사망자 17명⁵⁰⁾에 나타나는 과실 8명, 불가항력 8명의 비율과 비교해 보아도⁵¹⁾ 전체 사고 원인 중 과실의 비중은 비정상적으로 높다. 따라서 『노동재해조우기록』에 편철된 노동재해 일람표는 그 분석 내용을 두고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당시 광산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다른 자료들을 보면 이러한 의심은 더욱 굳어진다. 1920년대 광산사고의 책임비율에 대한 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47) 정혜경, 『일제말기 홋카이도(北海道) 스미토모(住友) 고노마이(鴻之舞)광업소 조선인 노동자 노동재해 관련 기록물 연구』, 『한일민족문제연구』 30, 2016, 73쪽.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인 점이 모리야 요시히코가 설명하는 「공상보고표철」의 발생 건수와 어긋난다는 점이다. 「공상보고표철」(1941.12.15.~1943.3.30.)의 발생 건수는 1, 143건인 반면에, 「노동재해조우기록」 내 노동재해일람표(1941.12.15.~1943.4.8.)의 발생 건수는 1,156건이다. 노동재해일람표에 표시된 1943년 4월 발생 건수는 3건이므로 이를 감안하더라도 역시 일치하지 않는다. 그 연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48) 정혜경, 위의 글, 2016, 73쪽.

49) 守屋敬彦, 앞의 책, 1990, 1594쪽.

50) 고노마이 광산에서 발생한 전보 내용을 분석한 정혜경의 연구에 따르면, 광산에서 발생한 전보 중 사망 관련 전보는 총 219건으로, 4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재해조우기록』에 수록된 사망자 수 17명을 모두 포함하면서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이러한 정황은 『노동재해조우기록』에 사망에 이르는 증상이 다수 누락되었음을 시사한다.(정혜경, 『스미토모(住友) 고노마이(鴻之舞)광산 발신전보(發信電報)를 통해 살펴본 조선인 노무동원 실태』, 정혜경 외, 『강제동원을 말한다 -명부편(1) 이름만 남은 절규』, 선인, 2011, 312쪽)

51) 사망자 17명 사망 원인의 상세 내용은 과실 8건 8명, 불가항력 3건 8명, 공란 1건 1명이다.

〈표 2〉 광산사고의 책임비율

연도	구분	원인					
		시설의 불안전	감독의 부족	과실	불가항력	불명	계
1924	가스탄진폭발	15	36	23	0	189	263
	갱내재해합계	93	133	326	359	290	1,301
1925	가스탄진폭발	5	58	18	4	9	94
	갱내재해합계	76	188	393	555	70	1,282
1926	가스탄진폭발	5	107	10	1	3	126
	갱내재해합계	68	262	313	544	36	1,223
1927	가스탄진폭발	74	133	82	3	19	311
	갱내재해합계	132	244	453	470	208	1,507
1928	가스탄진폭발	7	110	2	0	0	119
	갱내재해합계	31	297	369	451	107	1,255
1929	가스탄진폭발	0	220	37	0	1	258
	갱내재해합계	58	396	392	504	68	1,418
합계	가스탄진폭발	160	664	172	8	221	1,171
	갱내재해합계	458(6%)	1,620(20%)	2,246(28%)	2,883(36%)	779(10%)	7,986(100%)

비고: 일본광산협회 편 자료 제3집 및 제20집에 의해 작성, '갱내재해합계'에 '가스탄진폭발'도 포함
출처: 柳瀬徹也, 『我国中小炭礦業の従属形態』, 伊藤書店, 1944, 142~143쪽.

이에 따르면 사고의 책임비율은 불가항력, 과실, 감독의 부족, 불명, 시설의 불안전 순으로 추정되고 있다. 감독의 부족과 시설의 불완전을 외부 환경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높은 순으로 다시 나열해보면, 불가항력 36%, 과실 28%, 외부 환경 26%, 불명 10% 순으로 나타난다.

한편, 메이지광업소(明治鑛業所)에서 1944년 6월부터 1945년 8월까지 펴낸 노무월보(勞務月報)에서도 사상(死傷)의 건수와 그 원인을 집계한 바가 있다.⁵²⁾

52) 모리야 요시히코의 자료집에는 메이지광업소 노무월보가 1944년 6월부터 1945년 10월까지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1945년 8월까지만 기재했다.

〈표 3〉 메이지광업소 노무월보(1944.6~1945.8) 내 업무상 사상 집계

기간	불가항력		자기과실		타인과실		시설미비		기타		소계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1944년 6월	17		5		1		8				31	
1944년 7월	17		9				11				37	
1944년 8월	7	1							5		12	1
1944년 9월	21		9								30	
1944년 10월	24	1	1								25	1
1944년 11월	22										22	
1944년 12월												
1945년 1월	23										23	
1945년 2월												
1945년 3월	22								6		28	
1945년 4월			20	1	1		4				25	1
1945년 5월	6		8		1				21		36	
1945년 6월	15		11		2		3		1		32	
1945년 7월	18		26			2	4				48	2
1945년 8월			4								4	
소계	192	2	93	1	5	2	30		33		353	5
총계	194(54%)		94(26%)		7(2%)		30(8%)		33(9%)		358(100%)	

출처: 林えいたい, 『戦時外国人強制連行関係史料集 2 朝鮮人 1』, 明石書店, 1991, 1155~1211쪽.

메이지광업소에서는 1944년 6월부터 1945년 8월까지 부상 353건, 사망 5건 총 358건의 사상이 발생했다. 자기과실과 타인과실을 하나로 묶고, 시설 미비를 외부 환경의 요인으로 간주하여 높은 순으로 나열해보면 불가항력 54%, 과실 28%, 외부 환경 8%, 기타 8%가 된다.

일본광산협회와 메이지광업소의 분석에서 비율상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대체로 불가항력이 가장 높고 그 뒤를 과실이 따르며 이 둘을 더하면 70% 인권의 비중을 차지한다. 물론 민족별 구분이 없고, 사고의 치명도를 가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작업장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지만, 전반

적인 사고 원인 분석의 경향을 확인할 수는 있다고 여겨진다.

이로 미루어보았을 때, 『노동재해조우기록』에 수록된 노동재해 일람표 내 과실/불가항력 분류 결과는 크게 2가지 이유에서 특기할 만하다. 첫째, 과실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불가항력과 과실은 광산 사고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서, 광산에 따라서는 둘 사이의 수치가 엇비슷하게 나오거나 설사 뒤바뀌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고노마이 광산의 경우 과실이 불가항력을 훌쩍 넘긴 데에다가 80%를 웃도는 압도적인 비중을 홀로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여타의 원인 분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된다. 둘째, 애당초 구분의 문제일 수 있겠으나 고노마이 광산의 원인 분석에서는 시설의 미비나 감독의 부실 같은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한 사고가 단 한 건도 집계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지는 않더라도 외부 환경 요인 역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1천 건이 넘는 사고 중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한 사고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집계를 끝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정리하자면, 사고 발생 직후 현장 조사위원의 판단이 강하게 반영된 『노동재해조우기록』 내 노동재해 일람표는 자의성이 함의하는 불규칙성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논함에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로 치우쳐있다. 사고 발생의 복잡한 인과관계를 도외시한 채, 외부 환경과 사고의 연결 고리를 끊어버리고 일관되게 사고의 귀책사유를 피해자 개인에게 돌린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미쓰비시(三菱) 비바이(美唄) 탄광의 사고 사례에서도 발견된다. 1944년 5월 16일 오전 11시 50분경 수갱(堅坑) 북부 제1 사갱(斜坑) 사부(御部)에서 대규모 가스 폭발이 발생했다. 북부에 입갱(入坑)했던 327명 중 사망자 97명, 부상자 14명, 행방불명 12명(사망으로 판정) 등 총 사상자 123명에 이르는 대규모 참사였다. 사망 인원 109명 중 조선인은 74.3%에 해당하는 81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갱내부로 좁혀서 계산하면 조선인의 사망자 비율은 더욱 높아진다.

〈표 4〉 1944년 비바이 탄광 수갱 가스 폭발 사고 피해자 상황

인원 구분	입갱	사망	부상	계	사상자 비율 (사망자 비율)
직원	327	2		2	1.6%(1.8%)
광부(일본인)		15	14	29	23.6%(13.7%)
광부(조선인)		81		81	65.9%(74.3%)
근로보국대 ⁵³⁾		11		11	8.9%(10.1%)
계	327	109	14	123	100%(100%)

출처: 林えいたい, 『戦時外国人強制連行関係史料集 2 朝鮮人 1』, 明石書店, 1991, 56쪽.

사고 직후 작성된 「1944년 수갱(豎坑) 폭발재해에 대하여」⁵⁴⁾에는 폭발 사고의 경과와 그 원인에 대하여 조사된 바가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오전 11시 50분경 수갱 북부의 환풍기에 충격이 느껴진 동시에 갱의 입구에서 검은 연기가 발생했다는 전화가 수갱에서 사무소로 전달되었다. 즉시 조사한 결과 수갱 북부 사구역(卸區域)에서 가스 폭발이 있다고 판명되었지만, 당시 북부의 피해정도와 원인은 알 수 없었다.⁵⁵⁾ 입갱했던 327명 중 오후 6시 현재 사망자 2명 중경상 14명이 확인되었고 105명이 여전히 행방불명이었다. 행방불명자의 수습은 5월 18일 무렵 시작되어 6월 24일에 완료되었는데 결

53) 1938년 조선총독부의 통첩(『국민정신총동원근로보국운동에 관한 건』(1938.6.26.))에 의하여 시작된 근로보국대는 ‘근로보국(勤勞報國)’을 내세워 학생, 여성, 농촌인력 등을 일상적으로 동원했던 방법이었다. 이후 1941년 <국민근로보국협력령>에 의하여 국민근로보국대로, 1945년 <국민근로동원령>에 의하여 국민의용대로 이어지며 노무동원의 한 요소로서 존속했다. 당초 도내 공공사업과 국책공사에 도내 노동력을 동원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점차 도외와 한반도 바깥까지 동원 지역을 넓혀갔다. 한반도 바깥으로 동원된 근로보국대는 모집·국민징용·관할선으로 구분되는 노동력 동원 방식의 확장이라기보다는 ‘보국대’라는 용어의 월경이자 ‘근로보국’의 의미를 확대적용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고용관계의 성립 위에서 진행되었던 여타의 노동력 동원 방식에 비하여, 근로보국대는 자발적인 무상의 노동력 봉사 개념을 토대로 하는 일종의 ‘노동봉사단’에 가까웠다.(허광무·정혜경·김미정, 『일제의 전시 조선인 노동력 동원』, 동북아역사재단, 2021, 157~218쪽) 따라서 모집·국민징용·관할선과 근로보국대 모두 공통적으로 일제에 의한 노동력 동원 방식임에도 동원 근거나 그 성격면에서 근로보국대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일례로 근로보국대는 고용관계를 매개로 적용되는 <건강보험법> 및 <후생연금보험법>과 무관한 집단으로 간주되었다.(『第84回帝國議會 衆議院 戰時特殊損害保險委員會 第7号 昭和19年1月29日』, 57쪽)

54) 「1944년 수갱(豎坑) 폭발재해에 대하여」의 전체 내용은 林えいたい, 앞의 책, 1991, 449~450쪽에 수록되어 있다.

55) 林えいたい, 앞의 책, 1991, 449쪽.

국 107구의 시신이 갯의 입구에서 나왔다.⁵⁶⁾

『1944년 수갱(堅坑) 폭발재해에 대하여』에 기록된 폭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갯내의 배기 통로에서 조선인 노동자가 규칙을 어기고 담배를 피우는 바람에 여기서 불이 나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⁵⁷⁾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 폭발의 원인을 ‘조선인의 흡연’으로 지목한 이유에 대해 『탄광에 살다(炭鉱に生きる)』⁵⁸⁾에서는 “입갱할 때 수검(搜檢)⁵⁹⁾에서 한 노동자로부터 담배를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⁶⁰⁾ 수검 시 담배를 발견했으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곧바로 담배를 압수했을 텐데, 수검 시 담배를 발견했다고 ‘조선인의 흡연’을 폭발 원인으로 ‘추정’하는 것은 다소 의아한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1944년 수갱(堅坑) 폭발재해에 대하여』 내 원인 사항에 덧붙인 내용이 매우 주목된다. 원인 항목의 두 번째 내용에는 ‘조선인의 흡연’이라는 원인 ‘추정’은 광업소장이 광산국장에게 제출한 시말서에서 발췌한 것이라는 대목이 있다.⁶¹⁾ 추측건대, 초동조사 시 현장보고서를 작성할 때 수검 시 있었던 불상사도 조사되었고 여기에 판단이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광산국에 보고가 된 것이다. 초기 조사로는 ‘원인 불명’이었던 것이 ‘조선인의 흡연’으로 탈바꿈한, 다소 의아한 원인 분석이 조사보고서에 그대로 수록된 정황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울러 반드시 지적해야 할 점이 폭발이 있었던 작업장은 가스의 양이 매우 많았고 탄진(炭塵)에서 가스가 나오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

56) 林えいたい, 앞의 책, 1991, 56쪽.

57) 林えいたい, 앞의 책, 1991, 449쪽.

58) 『탄광에 살다』는 1954년 미쓰비시 비바이 탄광 문학회의 서클지 『炭炎』의 깊이를 더하려는 움직임에서 시작되었다. 탄광노동자의 입장에서 탄광의 발전과정, 탄광노동자 노동생활의 변화를 다시 쓰려는 기획으로서 “탄광의 생활사”를 표방하였다. 이후 6년간의 작업을 거쳐 1960년 발간되었다.

59) 갯내에서 담배, 발화기구 등은 가스·탄진(炭塵) 폭발의 원인이 되므로, 입갱할 때 수검은 일본인과 조선인 구별 없이 엄하게 진행된다. 적발되면 대개 일주일 정도 입갱을 금지시키거나 일급이 낮은 갯의 노동의 잡용(雜用)에 투입시킴으로써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었다.(守屋敬彦, 앞의 글, 1997, 126~127쪽)

60) 三菱美唄炭鉱労働組合 編, 『炭鉱に生きる -炭鉱労働者の生活史』, 岩波書店, 1960, 122쪽.

61) 林えいたい, 앞의 책, 1991, 449쪽.

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발파 채탄이 이뤄졌는데, 이러한 위험성도 불문에 부쳐진 상태였다.⁶²⁾ 즉, 해당 사고 현장은 언제라도 폭발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환경이었던 것이다.⁶³⁾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기실 이 사고는 과실을 논하기에 앞서 이미 ‘예정된 재해’였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을 논하는 장에서 회사 측과 당국은 조선인 노무자의 책임을 특정하였고, 다소 석연치 않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직접적인 과실이 해당 개인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비바이 탄광 가스 폭발 사고 사례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논의가 얼마나 허약한지, 따라서 그것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앞서 2장에서 논한 바,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의 성격을 규정하는 판단들은 일견 자의적이며 개인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재해조우 기록』에 나타나는 과실 여부 판정이나 비바이 탄광 폭발 사고 사례에서 보이듯이, 이러한 판단은 대체로 일관되며 따라서 일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함의한다. 정황상 과실의 영향보다 열악한 외부 환경이 두드러지는 상황, 바꿔 말해 이른바 ‘예정된 재해’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더라도 사고의 원인을 판정할 만한 권위를 갖춘 자는 피해자의 과실을 가리키는 일정한 방향성을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사고의 배경을 제공했던 자와 재해의 여부를 판정하는 자가 대개 겹치는 상황은 이러한 정향성(定向性)을 납득할 수 있게 한다.

62) 三菱美唄炭鉱労働組合 編, 위의 책, 1960, 122쪽.

63) 다음과 같은 내용은 당시 생산증강이라는 목표에 밀려 작업장 내 안전이 등한시되는 양상을 드러낸다. “규칙에서는 발파 3번마다 물을 뿌려 炭塵을 방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작업장의 발파에서는 70~80번도 계속해서 발파를 하고 작업장은 炭塵으로 자욱하게 되어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목표 出炭量을 달성할 수 없었다. 더구나 結線을 할 때 先山이 충분히 피산하지 않은 가운데 발파를 하는 것도 적지 않고 발파 장소 부근에 노동자가 있어도 거리낌없이 발파를 한다.”(三菱美唄炭鉱労働組合 編, 위의 책, 1960, 115쪽)

5. 자의적인 판단의 작용 II - 책임의 휘발

지금까지 논한 바를 정리하자면, 노동 현장에 상존하는 리스크를 감안하여 작업장 내 사고에 대한 부조를 둘러싼 합의가 도출되어가는 가운데, 사고의 원인 규명에 관한 문제, 즉 직접적인 책임의 향방은 사고 발생의 인과 너머 인정의 영역에서 판가름 나게 된다. 그런데 보상 여부와 별개로 해원을 가능하게 하는 인정의 영역은 자의적이면서 잠정적이다. 이 유동적인 인정의 영역에서 사고의 책임은 불안정하게 부유하는 듯하지만, 「노동재해조우기록」의 내용이나 비바이 탄광 폭발 사고 처리를 보건대, 사고 발생을 좌우하는 복잡다기한 외부 조건, 예컨대 불가항력이나 작업 환경 같은 것과의 고리를 끊고 대체로 피해자 개인의 과실로 향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과실로 대면되는 사고의 책임이 부유하다가 자연스럽게 일정한 방향으로 고이는 것을 넘어서 아예 휘발하는 경우도 있다. 명문화의 바깥에서 자의성이 발휘되는 강도, 바꿔 말해 사고의 성격을 규정하는 힘이 더욱 강하게 관철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규정하는 자의 상황과악과 이해관계가 그대로 반영된다. 이 지점에서 사고의 내적 인과를 엄밀하게 따져서 책임을 논하는 작업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고의 내적 인과를 소개하고 이 공백을 메울 때, 다시 말해, 규정하는 자가 자신의 이해관계 위에서 판단을 관철할 때 활용하는 어법이다. 어떻게 작업장 내 사고를 사회적 책임의 영역 안에 들여오는가, 반대로 어떻게 작업장 내 사고를 끝내 개인의 불운이나 일탈로 치부하여 사회 바깥으로 내모는가. 이렇게 엮갈리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어법을 통해 노동재해 일반의 문제에 자리하는 핵심을 포착할 수 있다.

1940년 4월 3일 스미토모 고노마이 광업소에서 일어난 대규모 폭발사고에서는 현장에 있었던 9명 전원이 사망했기 때문에 폭발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⁶⁴⁾ 고노마이 광산에서는 사고 발생 시 부조료 지급 기준에

64) 守屋敬彦, 앞의 책, 1990, 1282~1283쪽. 이 날의 사고로 1940년 4월 3일 오후 8시 57분에 고노마이 광산측 太田이 감독국장 安達 앞으로 발신한 전보는 다음과 같다. “오늘 오후 4시 10분경 근처

〈표 5〉 스미토모 고노마이 광산 유족부조로 지급 내역 일부

사망년월일	민족	성명	고용기간	표준보수 일액(日額)(円) ⁶⁵⁾	지급 일수	지급액(円)
1940.04.03.	일본인	西岡三郎	5개월22일	1.90	1,137	2,160
1940.04.03.	조선인	崔常鎭	5개월28일	1.60	1,213	1,940
1940.04.03.	조선인	田珣男	5개월28일	1.60	1,150	1,840
1940.07.16. ⁶⁶⁾	조선인	安仁根	6개월11일	1.60	650	1,040
1943.02.14. ⁶⁷⁾	조선인	宋本實	5개월23일	1.70	650	1,105
1943.02.26. ⁶⁸⁾	조선인	禹英植	1년2개월6일	1.70	650	1,105
1943.02.26.	조선인	金原汶泰	1년2개월6일	1.70	650	1,105
1943.02.26.	조선인	大原漢用	1년2개월6일	1.70	650	1,105
1943.02.26.	조선인	清原相福	1년 11개월 5일	2.70	600	1,620
1943.02.26.	조선인	金城義治	11개월8일	1.70	650	1,105

비고: 굵은 선 상자 안에 포함된 인원이 1940년 4월 3일 폭발사고의 사망자이다.

출처: 守屋敬彦, 『住友鴻之舞鑛山への強制連行朝鮮人の勞働災害』, 『朝鮮人強制連行論文集成』, 明石書店, 1993, 71~73쪽.

(俱知安)의 5호갱 350미터 갱도 휴게소에서 화약이 폭발하여 갱부 8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중상 4명, 경상 4명)당함”.(守屋敬彦, 앞의 책, 1990, 1491쪽)

- 65) 1926년 6월 30일 공포된 <건강보험법시행령>에서는 건강보험 피보험자의 정기적인 급여 액수를 기준으로 35전 미만에서 3엔 75전 이상까지 16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제1조) 각 구간마다 30전에서 4엔까지 표준보수 일액을 설정하였다.(제3조) 1940년 4월 3일 사고 피해자들에게 적용되었을 건강보험표준보수 등급표는 社會保障研究所, 『日本社會保障前史資料』 第7卷, 至誠堂, 1981, 29~30쪽에 기재되어있다. 표에 따르면 표준보수 일액이 1엔 90전이었던 西岡三郎의 소득 구간은 1엔 75전 이상 2엔 5전 미만이었고, 표준보수 일액이 1엔 60전이었던 崔常鎭·田珣男의 소득 구간은 1엔 45전 이상 1엔 75전 미만이었다.
- 66) 이 날의 사고로 고노마이 광산측 太田이 감독국장 스즈키 요시후(スズキヨシヲ) 앞으로 발신한 전보는 다음과 같다. “16일 오후 4시경 倶知安(俱知安)의 5호갱 240미터 갱도 60번 중단에서 점화 작업 중 화약 폭발로 인하여 채광부 2명이 즉사함. 기타 부상자 없음”.(守屋敬彦, 앞의 책, 1990, 1493쪽)
- 67) 이 날의 사고로 1943년 2월 14일 오후 5시 40분에 고노마이 광산측 加賀山이 감독국장 앞으로 발신한 전보는 다음과 같다. “오늘 정오경 元山갱 230미터 갱도에서 운반부 1명이 광석(鉍石)을 파헤치는 작업 중에 낙석으로 인하여 압사함. 기타 부상자 없음”.(守屋敬彦, 앞의 책, 1990, 1522쪽)
- 68) 이 날의 사고로 1943년 2월 26일 오후 5시 30분에 고노마이 광산측 加賀山이 감독국장 久保貴六 앞으로 발신한 전보는 다음과 같다. “오늘 오전 7시경 8호갱 350미터 갱도 수갱(堅坑) 플랫폼 부근에서 실화(失火)가 있었고 불은 곧 가라앉았지만, 그 연기로 인하여 운반부 1명이 질식사함. 기타 입경자 채광부 3명, 운반부 3명 있었음. 극력 수색 중이지만 펌프가 작동 불능이 되어서 유수(遊水)로 인하여 생존 가능성 희박”. 전보 발신 내역에 따르면 3월 5일에 입경자 급원문태, 대원한용, 청원상복, 금성희의 시신이 발견되어 본격적 행정관청과 가족에게 사망 사실이 통고되었다.(守屋敬彦, 앞의 책, 1990, 1522~1523쪽) 아울러 이 날의 사고 원인 조사 보고서는 守屋敬彦, 앞의 책, 1990, 1604쪽에 수록되어 있다.

관한 내규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경우에 따라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었다. 예컨대, 전례(前例), 근속기간, 건강보험기준 보수등급, 연령, 유가족의 수와 생활상황, 장애의 정도, 단체생명보험가입 여부 등이 있었고, 조선인이라면 일본인과 함께 당한 사고인지도 감안했다.⁶⁹⁾ 아래 표는 1940년 4월 3일 사망자와 그와 비교할만한 조선인 노무 사망자들을 추려서 작성한 것이다.

“당 광산 창업 이래 미증유의 대재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대규모 참사였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종업원은 물론 사회 일반에 주었던 영향도 상당히 심대함을 고려”하여 기준보다 현격하게 좋은 조건으로 처우했다. 특히 이 사고는 일본인이 다수 포함된 참사였는데, 이들과 조선인 사망자들의 지급 총액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조선인 사망자의 지급 조건이 다른 사고의 조선인 사망자에 비해서 월등하게 후했다.⁷⁰⁾ 최상진(崔常鎭)과 전순남(田珣男)은 근무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비슷한 기간 근무한 안인근(安仁根)과 송본실(宋本實)보다 지급 일수가 현저히 높았고, 심지어 1년 11개월의 청원상복(淸原相福), 1년 2개월의 우영식(禹英植), 금원문태(金原汶泰), 대원한용(大原漢用), 11개월의 금성의치(金城義治) 등 근무 기간이 더 긴 사람보다도 처우가 훨씬 좋았다.⁷¹⁾ 한편, 1940년 4월 3일 사고로 인한 중상자인 홍기완(洪基完), 김현목(金鉉穆), 이칠손(李七遜) 3명에 대해서도 유족부조료를 특별지급하고, ‘손해배상의 목적으로 상당한 가급(加給)’을 검토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중상이 안정될 때까지 일 할 의지가 없거나’, ‘특별 가급된 이

69) 고노마이 광산에서 시행했던 부조내규에 관해서는 守屋敏彦, 앞의 글, 1993, 69~70쪽을 참고할 것.

70) 1940년 4월 3일 사고 처리 과정에서 광산 측은 조선인 사망자 대상으로 지급 일수를 대폭 늘림으로써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 지급 총액을 비교적 균등하게 맞추려고 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일액 액수와 지급 일수 사이에 일종의 균형(trade-off)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사망자마다 표준보수 일액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지급 일수를 조정함으로써 지급 총액을 비슷하게 맞추었다. 따라서 일본인 사망자 중에서 표준보수 일액이 3엔 10전이었던 3명은 지급일수가 800일 인원에 그치고 있다. 결국 조선인 대상 지급 일수가 높다는 점은 역으로 표준보수 일액이 낮다는 점, 즉 소득 구간이 낮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둘째, 조선인 사망자 대상으로 지급 일수를 대폭 늘림으로써 지급 총액을 맞추었지만 그럼에도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 총액 격차는 뚜렷했다. 최상진과 전순남 모두 2,000엔을 넘기지 못한 데에 비하여, 일본인 사망자들은 대체로 2, 500엔 인원의 부조료를 지급받았다.(守屋敏彦, 앞의 글, 1993, 70~71쪽)

71) 守屋敏彦, 앞의 글, 1993, 70쪽.

후 반도인에 대한 부조(扶助)에 상당한 곤란을 야기할 것을 우려하면서 일 반적인 가급에 그치고 말았다.

그런데 이들 생존자들의 특별가급을 검토하는 이유로 회사 측에서는 “본 이재자는 전혀 과실이 없이 가장 안전한 휴게소에서 휴게 중에 제3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불의의 재해를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⁷²⁾ 애초에 폭발 원인이 불명으로 규정된 사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이라고만 표현한 대목이 눈에 띈다. 비유컨대 책임을 뒤집어써 허수아비를 세워놓은 듯하다. 이로써 모두가 책임을 면제받고 사고의 성격을 규정하는 자의 현실적인 고려에 따라 일괄적인 차등 보상만 남은 것이다.

이러한 처리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1940년 4월 3일의 사고가 워낙 대규모 이고, 일본인 사망자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회사 측에서는 막대한 금전 적 지출이라는 부담과 성분이 다른 노동자들 사이의 위화감 조성 및 노동의 욕 감퇴라는 부담 사이 저울질 끝에 타협점을 강구했던 것이다. 이에 모두의 책임을 휘발시켜버리는 모호한 표현까지 동원된다. 규명보다는 판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구성된 노동재해는 사고를 둘러싼 현실의 복잡한 고려사항들 가운데에 위치하는 균형점에서 인정되었다.

하지만 강제동원 조선인 노무자들의 노동재해가 놓인 균형점은 극히 비대칭적인 것이었다. 이처럼 극단적으로 비대칭적인 지형 위에서 오직 판단만이 유효할 때 작업장 내 사고는 비단 사고에 머무르지 않고 그 판단에 의하여 극단적으로 비화하기도 한다. 즉, 작업장 내 사고가 판단을 내리는 자의 의향에 따라 그 성격이 결정되면서 애당초 인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1944년 6월 22일 오후 3시 반경 홋카이도 도마리무라(泊村) 미쓰비시(三菱) 오유바리(大夕張) 탄광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는 그 전형적인 예이다. 이 폭발로 인한 사상자가 사망 11명(계원 1명, 일본인 6명, 조선인 4명), 중상 29명(일본인 11명, 조선인 18명), 경상 4명(일본인 4명)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

72) 守屋敏彦, 앞의 글, 1993, 74쪽.

참사였다. 6월 24일 본사로 보낸 『미쓰비시 오유바리 탄광재해의 보고서』⁷³⁾에는 사고의 종류가 ‘가스 폭발’로 분류되어 있지만, 원인란에는 “현재 광산국(鑛山局)이 조사하고 있다”라고만 기록되어있다. 하지만 사고를 ‘변재(變災)’로 기록한 것으로 보아 폭발 원인을 수습 초기에 밝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은 이 보고서 내용 중 ‘7. 기타 상황’과 ‘8. 광산이 취한 조치’를 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그런데 원인을 명확하게 밝힐 수 없게 되자, 대신에 당시의 정황을 통해 사고의 원인을 ‘설계’하는 모습이다.

7. 기타 상황

(1) 6월 17일 갱내 인차사(人車御)의 계원용 걸상 위에 조선말과 일본어 조사(助詞)를 써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은 편지에 성냥을 올려두었던 사건이 있어 이에 대해 경찰 당국은 극비리에 범인 수색에 힘쓰고 있는데도 아직도 검거하지 못하고 화재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사 중임.

“근무시간이 매일 너무 길어서 감당할 수 없다. 임금이 일본인에 비해 적다. 밥이 부족해 일할 수 없다. 만기(滿期)가 와도 언제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정해지지 않아 이대로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 어차피 죽는다면 갱내에 불을 질러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는다. 소장은 각오가 되어있는가”

(2) 이와 관련하여 경찰 특고(特高)의 견해로, 변재(變災) 원인에 대해서 광산국(鑛山局)에서는 부담스러워 말할 수 없겠지만, 아마도 불은분자의 결행이 원인일 수도 있다는 말이 있음.

8. 광산에서 취한 조치

(1) 이번의 스미토모(住友) 아카비라(赤平), 또는 가야누마(茅沼)의 분쟁 사건 등과 같이 그 수단과 방법이 전율할 만큼 악질적인 점을 고려한다면, 광산으로서는 단순한 화재로 방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즉시 임시 방법을 강구하고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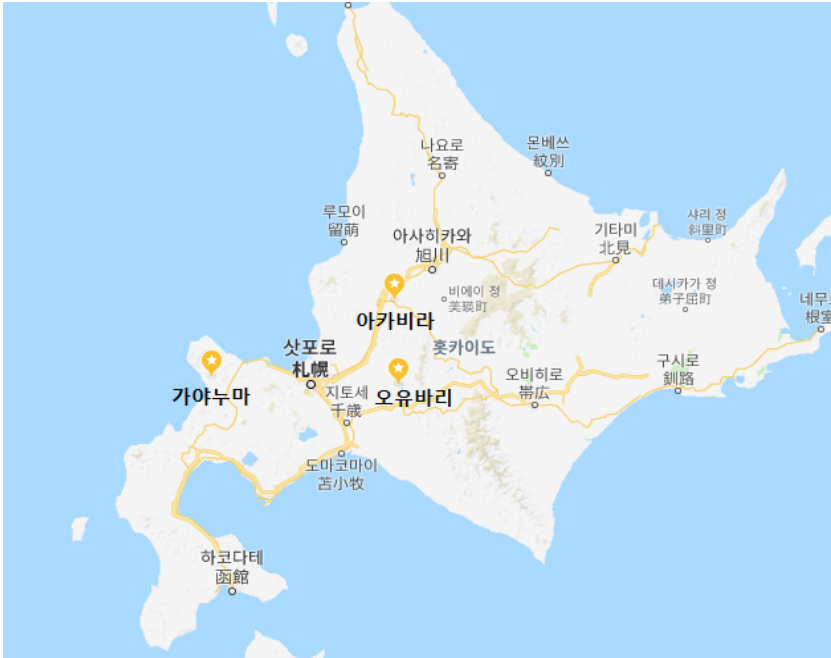
73) 『미쓰비시 오유바리 탄광 변재의 보고서』의 전체 내용은 朴慶植 編, 『朝鮮問題資料叢書 第1卷 戰時強制連行・勞務管理政策 I』, アジア問題研究所, 1982, 329~335쪽에 수록되어있다.

- 특고와 연락을 취해 각 숙소 별로 사상의 동향을 조사하도록 해 현재 실시 중.
- 특별경비대 본부와 연락을 취해 비상사태 발생 시 방도를 강구.
- 요장(寮長)들을 즉각 소집해, 과장(課長)이 각종의 사범(事犯), 계원(係員)의 동요를 단속하도록 지시.
- 과장이 석탄 핫카이도지부(石炭北海道支部)와 광산국에 전화를 해 이번의 스미토모 아카비라 사건처럼 귀선(歸鮮)시키는 유약한 해결책이나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일이 없도록 의뢰하고, 소요 혹은 분쟁에 의한 귀국을 부추기는 악사상(惡思想)을 과급시키는 일이 없어야 함.
- 일선 간부(대장(隊長), 반장(班長), 조장(組長))을 모아 회식을 열어 화목한 분위기에서 설득한다는 방침을 계획 중이며 곧 전원에게 시행할 방침.
- 현재 광산은 어떠한 동요도 없이 지극히 평온해서 출역률(出役率)은 23일 96%, 오늘도 동일.
- 광산의 조선인들이 아카비라 방면과 주고받는 모든 편지는 당분간 비밀리에 압수하는데, 이는 특고, 우편국(郵便局)과도 합의.

이 무렵의 주요 사건들을 날짜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944년 6월 17일	미쓰비시 오유바리 탄광의 갱내에서 방화를 암시하는 편지 발견
1944년 6월 20일	가야누마 탄광에서 조선인 400여명 파업
1944년 6월 22일	스미토모 아카비라 광산에서 조선인 1,200명 ‘폭동’
1944년 6월 22일	미쓰비시 오유바리 탄광에서 원인 불명의 폭발에 의한 화재 발생

그리고 당시 각 광산의 위치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 ‘폭동’과 관련된 광산들의 위치

폭발이 있기 5일 전인 6월 17일 오유바리 탄광 갱내에서 ‘자폭 테러’를 암시하는 편지가 성냥과 함께 발견되었다. 이어서 3일 후인 20일에는 인근의 가야누마 탄광에서 대규모 파업이 있었다.⁷⁴⁾ 그리고 폭발 사고 당일인 22일에는 아카비라 광산에서 ‘폭동’이 일어났다.⁷⁵⁾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74) 『특고월보』에 따르면 1944년 6월 20일 새벽 가야누마 탄광 소속 조선인 노무자 이우종이 ‘만성기 관지염’으로 사망하면서 동료에게 “나는 남관료장(南關寮長)에게 맞아 죽는다. 복수를 해달라.”라고 유언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조선인 노무자들 사이에 퍼지면서 격앙된 조선인 노동자 250명이 오전 8시 남관료에 가서 요장과 조선인 조수를 폭행하였다. 관할 경찰서의 진압으로 일단락되었지만, 다음날인 21일 오전 6시 임꺽 조선인 노동자 400명이 전원 조퇴하며 파업에 나섰다, 곧이어 남관료에 다시 들어가 각종 기물을 파손하였다. 이에 주모자 9명을 검거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폭행에 의해서 사망하였다던 이우종의 사인이 집장 인허증에는 ‘만성기관지염으로 인한 병사’로 기재되었다는 점이다.(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홋카이도 가야누마(茅沼) 탄광에 강제동원된 전북 출신자의 피해 진상조사』, 2010, 85~86쪽)

75) 아카비라 광산에서는 4월 기간 만료자 45명이 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음에도 6월 기간 만료자 60명과 함께 정착을 철회하였다. 광산 측과 조선인 기간 만료자 사이 갈등에서 비롯하여 조선인 1, 200명이 참여한 ‘폭동’으로 커졌다. 이에 경찰이 개입하여 57명을 검거하였다. 같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에 ‘변재’와 ‘소요’가 연달아 일어나자, 경찰 당국에서는 이를 일련의 사건으로 간주했다.⁷⁶⁾ 당시 이미 조선인 노무자들의 단체행동에 심각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⁷⁷⁾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했던 것이다. 특고(特高)는 “광산국에서는 부담스러워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그 수단과 방법이 전을할 만큼 악질적”인 소요 사태와 ‘방화’가 의심되는 “변재”를 묶어 “아직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음”에도, 조선인 “불온분자의 결행”에 심증을 두고 있었다. 이처럼 사고의 성격이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모종의 책동이 된 이상, 후속 조치 또한 사고 예방보다는 철저한 노무관리에 초점에 맞추어져서 강구되었다. 그리하여 광산 안팎의 통제를 강화해서 노무자들 사이 동요를 최대한 억누르는 한편, 회식을 여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데에 주력하였다.

요컨대, 폭발 사고의 원인이 명시되지 못하고 공백으로 남자, 정황을 종합해 이를 ‘테러’로 규정하고 노무관리 강화의 구실로 삼았던 것이다. 이리하여 정작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사고 수습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 논의는 뒷전을 밀리고 치안 유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처럼 판단을 매개로 인정을 부여하

하고 오유바리 탄광과 달리 아카비라 광산에서는 그 무렵의 다른 사건과 연결지어 정리하지 않고, 개별 사건으로 처리하여 분석하고 있다. “만기 계약약 강행에 대한 불만”을 파업의 원인으로 꼽았고, 주모자들이 모의하고 결행하기까지의 경위에 집중해서 정리해두었다. 즉, 분명하게 드러난 원인에 따라 경위를 분석하고 수습방안을 모색하였다. 광산 간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고, 심지어 아카비라 광산과 오유바리 탄광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데, 이와 같이 두 광산의 원인 분석과 사후 대처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대목은 특기할 만하다. 아카비라 광산 ‘폭동’의 전말과 수습 과정에 대해서는 朴慶植 編, 앞의 책, 1982, 337~357쪽을 참고할 것.

76) 1944년 6월에 연달아 일어났던 오유바리·가야누마·아카비라 광산에서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1944년 12월 고등법원 검사국에서 발간한 『조선검찰요보(朝鮮檢察要報)』 제10호에 수록된 『일본 북부지역 조선인 노무자의 동향과 노무관리의 결함 상황』에 정리된 바도 있다. (독립기념관 자료발굴TF팀, 『번역 朝鮮檢察要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1, 578~580쪽)

77) 朝鮮人強制連行實態調査報告書編集委員會, 『北海道と朝鮮人勞働者』, 1999, 292쪽. ‘집단지행’이 개시됨에 따라 경찰당국은 조선인들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한 노동력의 질적 하락과 각종 소요사태 발생 등을 거론하며 집단으로 동원되는 조선인 노무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이들 안에 불온분자가 잠입하여 생산저해를 유도하여 ‘총후(銃後) 지원을 방해하는 한편, 조선인 노무자를 계몽·선동하여 독립운동을 기도하는 등 ‘내지’의 치안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요주의 단속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기가 깔려있었기 때문에 억압적으로 조선인 노무자들을 관리했던 기업과 긴밀하게 공조 체계를 이루며 협력할 수 있었다. (허광무, 『일제말기 경찰기록으로 본 일본지역 강제동원 조선인노동자의 관리와 단속 -‘도주’노동자 수배가 갖는 역사적 의미로 중심으로-』, 『한일민족연구』 35, 2018)

는 자가 작업장 내 사고의 성격을 규정하는 장을 독점한 채 전횡한 결과, 사고의 경과는 가공(架空)되고 사안의 성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비화하고 말았다.

위의 사례들로 보건대, 사고의 궁극적인 책임을 밝히고 그 성격을 논의함에 있어서 명문화된 규정 바깥에서 자의성이 작용하되, 대체로 식민지 출신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던 일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고의 배경을 제공하는 자와 사고의 성격을 규정하는 자가 일치하는 모습은 ‘직업적 리스크’가 분배되는 지형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었다. 이들이 사고를 둘러싼 소통의 장을 독점함에 따라 ‘부수적 피해’⁷⁸⁾를 입는 직접적인 피해자들로서는 사고의 수습과 개선안 마련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봉쇄된 상태였다. 즉, 사고의 성격을 두고 벌이는 각축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것이다. 피해자들에게는 리스크를 직접 완화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리스크를 감수한 대가로 단지 최소한의 보상만이 제공되었을 뿐이다. 그리하여 가혹한 노동조건에 내몰리면서도 자신들의 안전을 지킬 수 없었고, 오히려 자신들을 그리로 내몬 자들의 손에 자신의 안전을 계속 내맡길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들은 자의성을 제어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리도, 실질적인 위력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재해’라는 명명이 포괄적으로 함의하는 사회적 책임 바깥에 남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더하여 전쟁이라는 특수한 현실 상황과 식민지민이라는 취약한 지위는 이러한 부조리를 더욱 왜곡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78) ‘부수적 피해’란 원래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피해, 고통, 손해를 초래하는 군사행동의 결과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명령권을 독점한 사람이 내린 결정에 의해, 결정 과정에 배제된 타인의 생명과 생계가 위협에 처하게 되는 결과를 일컫는다. 위협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는 사람들은 그 위협이 초래할 결과를 겪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훨씬 손쉽게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다.(지그문트 바우만 저, 정일준 역, 『부수적 피해』, 민음사, 2013, 8~9쪽)

6. 결론

이 글에서는 총동원체제기 강제동원 조선인 노무자들의 사고 사례를 통해 노동재해의 구조적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우선 2장에서는 총동원체제기 강제동원 조선인 노무자들이 도일을 계기로 명목적이거나 '내지'의 노동자보호제도에 진입할 수 있었음을 보이고자 했다. 그러나 3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러한 진입이 무색하게도 당시 사고 직후 조사 절차 상 사고 경위 분석과 판정에 조사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자못 컸다. 이어서 4장에서는 이와 같이 자의적인 판단에 기댄 사고 원인 분석이 대체로 피해자 개인 과실로 향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드러내려고 했으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자의성이 극단적으로 강하게 발휘됨에 따라 작업장 내 사고가 더 이상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매우 민감한 별도의 사안으로 번질 수도 있음을 보였다.

직업적 리스크에 대한 이해가 공유되면서, 사회적 책임이 매개하는 보상을 통해 사고가 야기하는 갈등을 일단락짓는 방식이 공공연하게 자리잡아왔다. 그러나 그 사회가 직시해야 하는 정의의 문제가 단지 보상에 결부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사후적 수습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업적 리스크를 재분배하는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한다. 즉,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사고의 위험을 완화하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직업적 리스크를 재분배하는 장에 이해 당사자, 비껴 말해 잠재적 피해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총동원체제기 강제동원 조선인 노무자들에게는 그러한 창구가 구조적으로 봉쇄된 상태였다. 이들로서는 사고의 성격을 두고 벌이는 각축장의 문턱이 너무도 높았다. 그 결과 가혹한 노동조건에 내몰리면서도 자신들의 안전을 지킬 수 없었고, 사고의 직접적 책임 또한 뒤집어 써야 했다. 각축장에서 발휘되는 자의성을 제어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리도, 실질적인 위력도 갖지 못했던 탓에, 그들의 해원은 요원할 따름이었다.

■ 참고문헌

1. 자료

『조선총독부 관보』

『일본제국의회 회의록』

2. 단행본

保健衛生協會, 『就業制限と災害扶助』, 1937.

佐藤漸, 『朝鮮鑛夫勞務扶助規則に就て』, 『朝鮮勞務』第2卷 第6號, 1942.

국민총력조선연맹, 『국민징용의 해설: 질문에 답하는 일문일답식으로』, 1944.

柳瀨徹也, 『我国中小炭礦業の從屬形態』, 伊藤書店, 1944.

三菱美唄炭鉱労働組合 編, 『炭鉱に生きる -炭鉱労働者の生活史』, 岩波書店, 1960.

社會保障研究所, 『日本社會保障前史資料』第3卷, 至誠堂, 1981.

_____, 『日本社會保障前史資料』第7卷, 至誠堂, 1981.

朴慶植 編, 『朝鮮問題資料叢書 第1卷 戰時強制連行・勞務管理政策 I』, 아시아問題研究所, 1982.

守屋敬彦, 『戰時外国人強制連行關係史料集 3 朝鮮人 2 下』, 明石書店, 1990.

林えいだい, 『戰時外国人強制連行關係史料集 2 朝鮮人 1 下』, 明石書店, 1991.

長澤秀 編, 『戰時下朝鮮人中國人聯合軍俘虜強制連行資料集 2 朝鮮人強制連行 文書編』, 綠蔭書房, 1996.

樋口雄一, 『戰時下朝鮮人勞務動員基礎資料集 V』, 綠蔭書房, 200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훗카이도 가아누미(茅沼) 탄광에 강제 동원된 전북 출신자의 피해 진상조사』, 2010.

지그문트 바우만 저, 정일준 역, 『부수적 피해』, 민음사, 2013.

François Ewald, *The Birth of Solidarity*, Duke University, 2020.

3. 논문

守屋敬彦, 『住友鴻之舞鑛山への強制連行朝鮮人の勞働災害』, 『朝鮮人強制連行論文集』, 明石書店, 1993.

_____, 『第二次大戰下被強制連行朝鮮人労働者の寮生活: 住友鑛業所歌志内鑛業部新歌志内炭鑛親和寮』, 『佐世保工業高等專門學校研究報告』第34号, 1997.

정혜경, 『스미토모(住友) 고노마이(鴻之舞)광산 발신전보(發信電報)를 통해 살펴본 조선인 노동동원 실태』, 정혜경 외, 『강제동원을 말한다 -명부편(1) 이름만 남은 절규』, 선인, 2011.

알랭 쉬피오 저, 박제성 역, 『사회국가의 위대함과 시련』, 『노동법연구』, 2015.

정혜경, 『일제말기 훗카이도(北海道) 스미토모(住友) 고노마이(鴻之舞)광업소 조선인 노동자 노동재해 관련 기록물 연구』, 『한일민족문제연구』 30, 2016.

허광무, 『일제말기 경찰기록으로 본 일본지역 강제동원 조선인노동자의 관리와 단속 -도주·노동자 수배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한일민족연구』 35, 2018.

허광무·정혜경·김미정, 『일제의 전시 조선인 노동력 동원』, 동북아역사재단, 2021.

Arbitrariness in the Analysis on the Causes of Korean Forced Laborer's Accidents during the Total Mobilization Regime

Park Jinseo*

The fundamental problem of labor accidents as a social disaster is that the responsibility for the accident is put blame on the victim. This study tried to elucidate this problem through the accident cases of Korean laborers mobilized by force during the Total mobilization regime. With their arrival in Japan, they were able to be included into the worker protection system in mainland Japan, albeit on a limited level. However, apart from this incorporation, there was a lot of room for arbitrary judgment in the analysis of causes. And such arbitrary judgment tended towards the victim's personal negligence. Furthermore, in cases where arbitrariness was exercised to the extreme, the character of the accident could turn into a separate issue that is very sensitive. Because they were placed at a disadvantage in the arena of competition over definition of accident's character, the Korean forced laborers had to endure the damage caused by the accident.

Key words : Forced Mobilization, Industrial Accident, Accident Compensation, Occupational Risk

논문투고일 : 2023년 4월 21일 || 심사완료일 : 2023년 5월 2일 || 게재확정일 : 2023년 5월 15일

* Ph.D. student, Dep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